

의안번호	제571호
의결 연월일	2013년 월 일 (제325회)

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 
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영주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11월 12일

#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11월 12일  
발의자 : 김영주, 이광진, 김종필,  
강현삼, 김재중, 박문희,  
임헌경 의원

## 1. 개정이유

충청북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 중 일부내용이 2003년 개정당시 여건에 맞게 규정되어 있어 최근 보건의료관련 국책기관 이전,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,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개최 등의 주변여건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으로 주변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변경(안 제1조)
- 나.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‘사업’을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 및 바이오 산업 육성·진흥 등 현재 여건에 맞게 변경(안 제5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7. 관련부서 협의 :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정책과와 협의

8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##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이념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을 진흥하기”를 “오송생명과학단지  
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·진흥을”로,  
“운영·지원 하기”를 “운영·지원하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  
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 
같이 신설한다.

1.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 육성·진흥사업
2. 오송생명과학단지 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
3.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 개최
4. 바이오 분야 홍보·교육사업

5. 바이오 관련 인력양성사업

6. 기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공유재산을 사용”을 “공유재산 사용을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법령”을 “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오송국제 바이오엑스포의 이념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·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오송생명 과학단지</u>와 <u>오송첨단의료복합 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·진흥을</u> ----- ----- <u>운</u> <u>영·지원하기</u> ----- ----- -.</p>
<p>제4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2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조(정관) ①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사업) 재단은 다음 <u>각호</u>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<u>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후속 사업 발굴추진</u></p> <p>2. <u>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진흥</u></p> <p>3. <u>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조(사업)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<u>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 육성·진흥사업</u></p> <p>2. <u>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</u></p> <p>3. <u>바이오 관련 국제행사 개최</u></p> <p>4. <u>바이오 분야 홍보·교육사업</u></p>

<신 설>

<신 설>

제6조(재단의 재산) 재단의 재산은  
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.

1. · 2. (생 략)

제7조(운영비 등 지원) 도지사는  
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 
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 
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도지  
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  
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 
사용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제10조(다른 법령의 준용) 이 조  
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  
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법  
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 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
정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 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
정한다.

5. 바이오 관련 인력양성사업

6. 기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 
위한 사업

제6조(재단의 재산) -----  
----- 각 호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운영비 등 지원) -----  
-----  
----- 범위-----  
-----.

제8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-----  
-----  
----- 공유재산  
사용을 -----.

제10조(다른 법령의 준용) -----  
-----  
----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 
법률」 -----.

제11조(시행규칙) ----- 시  
행에 -----  
-----.

<삭 제>